

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
2. 기금의 운용수입
3. 기타 잡수입등

제3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도지사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(50~70범위에서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) 이상을 중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5조(기금의 회계관리) 이 기금의 수입·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·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,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충청북도건설교통국장
2. 기금출납원 : 충청북도치수과방재계장

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(결산및보고)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